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. 6. 30 선고 2022가단1260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(개명전 이름: B)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2. 6. 27.

판 결 선 고 2022. 6. 3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전라남도 여주시 D 대 109㎡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2000. 12. 15. 접수 제3042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 법조

공시송달에 따른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노행남

별지